

Employee Benefits**Auto-enrolment Pension Contributions**

회사와 직원이 Auto-enrolment Workplace Pension Scheme에 지불하는 최소 납부액이 2019년 4월 6일부터 오를 예정입니다. 이러한 납부액 인상이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은 누구입니까?

Auto-enrolment Pension에 해당하는 직원을 고용하는 모든 회사는 적어도 최소 납부액을 지불하고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Auto-enrolment과 같은 Pension Scheme을 도입하거나 또는 기존 Scheme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Auto-enrolment Pension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거나 또는 이미 인상된 최소 납부액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래 표는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최소 납부액과 그 인상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Date	고용주 납부액(%)	최소 직원 납부액(%)	총 최소 납부액(%)
인상 후: 2019년 4월 6일 이후	3%	5%	8%
인상 전: 2018년 4월 6일부터 2019년 4월 5일까지	2%	3%	5%

법적으로 총 최소 납부액은 Pension Scheme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총 최소 납부액에 대해 고용주로서의 최소 납부액 이상을 지불해야 하며, 직원은 남은 분을 분담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총 최소 납부액을 모두 부담하기로 결정한 경우, 직원이 추가적으로 더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와 직원이 Pension Scheme에 지불하는 금액은 회사가 선택한 Pension Scheme의 유형과 그 제도의 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이 분담하는 금액 역시는 해당 제도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Pension Scheme을 수립할 때 받으신 계약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는 3HR Benefits Consultancy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많은 회사들이 2019년 4월부터 최소한 8%의 납부를 요구하는 Pension Scheme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의 Pension Scheme에 대한 납부액 산정방식은 특정 소득범위를 기반으로 합니다. 2018/19 회계년도의 경우 이 범위는 연간 £6,032~£46,350 (월 £503 및 £3,863 또는 주 £116 및 £892)입니다. 이 수치는 정부가 매년 검토합니다. 이 유형의 Pension Scheme에 대한 기부금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급여; 임금; 커미션; 보너스; 초과근무; 법정 병가급여(SSP); 법정 출산휴가(SMP); 일반 또는 추가 부성휴가(SPP), 법정 입양휴가(SAP).

최소 납부액이 다른 Pension Scheme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This newsletter is design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thus should not be relied on. Definitive advice can only be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fact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aspect further, please contact us.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3HR Benefits Consultancy Limited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rm Reference Number: 556015

The registered office of both 3HR Corporate Solicitors Ltd and 3HR Benefits Consultancy Ltd is New Broad Street House,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Mainline Tel: 0207 194 8140 Web: www.3hrcc.com

Employee Benefits**확인사항**

2008년 연금법(Pensions Act 2008)에 따르면 직원에게 적절한 최소 납부액을 지불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입니다. 아래의 단계를 보신 후 2019년 4월 6일까지 납부액 인상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인상분이 적용될지 확인하십시오.

- 만약 확실하지 않을 경우 Pension Scheme 수립시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Pension Scheme 회사와 논의하거나 또는 3HR Benefits Consultancy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어느 직원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Pension Scheme 대상의 직원 모두에 대해 인상분이 적용되어야 하며, 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빠짐 없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3. 납부금 인상이 시행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십시오.

Payroll Provider 또는 Payroll Bureau를 사용하시는 경우, 인상 조정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 급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직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인상분에 대한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 설정이 어려울 경우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상담하십시오.
- HMRC 기본 급여 지급 툴을 사용하는 경우 시스템 상 인상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프로세스를 마련하십시오.

2019년 인상에 대해 직원에게 알리기

회사는 직원들에게 인상에 대해 고지해야 합니다. 3HR Benefits Consultancy는 커뮤니케이션 서신 초안을 제공하고 관련 프리젠테이션 및 워크샵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직원을 Pension Scheme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직원이 Auto-enrolment Pension Scheme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한 후, 충족한다면 Pension Scheme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회사는 적어도 최소 납부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인상 후에는 더 높은 최소 납부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상이 급여기간 중간에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상은 2019년 4월 6일부터 시행, 유효합니다.

2019년 4월부터의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19년 4월 6일부터 인상되는 최소 납부액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pension regulator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If you need help with any of the issues raised in this newsletter,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your usual 3HR Consultant.

Paul Beck
Manager – Employee Benefits
E: paul.beck@3hrbc.com



This newsletter is designed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ly. It does not constitute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and thus should not be relied on. Definitive advice can only be given with full knowledge of all relevant facts. If you would like to discuss any aspect further, please contact us.

3HR Corporate Solicitors Limited is a Solicitors Practice,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Solicitors Regulation Authority, No: 597935.
3HR Benefits Consultancy Limited is authorised and regulated by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irm Reference Number: 556015

The registered office of both 3HR Corporate Solicitors Ltd and 3HR Benefits Consultancy Ltd is New Broad Street House, 35 New Broad Street, London EC2M 1NH. Mainline Tel: 0207 194 8140 Web: www.3hrscs.com